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16

발의연월일 : 2021년 월 일

발 의 자 : 김현희, 송영섭, 황영호, 정정희 이의걸, 송순효, 강선영, 김용원 이종숙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2학기부터 무상의무교육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변경(안 제15조)

나. 장학금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16조, 안 제18조)

다.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를 대상에 맞게 수정(안 제20조, 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4조의2 및 제22조.

나. 협조부서 : 자치행정과

다. 입법예고 : 2021. 2. 19. ~ 2. 2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이바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이바지한 통장의 대학생”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장학생은”을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 제외된 통장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본문 중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를 “장학금은 1학기”로, “후 50일”을 “이후 학기 종료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이바지한 통장의 대학생 ----------.
제16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회에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장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 <단서 삭제>
제18조(장학생 선발) (생 략) <신 설>	제18조(장학생 선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 제외된 통장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20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

	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1학기 ---------- 이후 학기 종료일 ----------. ----------.

붙 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